

대전고등법원 2015. 8. 26 선고 2014나14106 판결 [주식매매대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B

변 론 종결 2015. 6. 24.

판결 선고 2015. 8. 26.

제 1 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 10. 24. 선고 2014가합101340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7,137,440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매매대금의 지급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청구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13. 11. 1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피고 발행주식 20%를 대금 33억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고 그 대금 중 3억 원을 2013. 11. 20., 7억 원을 2013. 11. 29., 10억 원을 2013. 12. 20., 13억 원을 2014. 1. 15.에 각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1. 20.부터 2014. 5. 2.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중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과세관청에 납부할 배당소득세액인 467,137,440원을 공제한 후 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인 합계 2,832,862,560원을 지급하였다.

2. 매매대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이 사건 매매대금 잔액인 467,137,440원(= 33억 원 - 2,832,862,560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원고로부터 피고 발행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이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주식 양도가 아니라 자본거래인 주식 소각 내지 자본 환급에 해당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령할 매매대금은 의제배당소득이 되므로, 피고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배당소득세 등으로 위 467,137,440원을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실제로 도 이를 과세관청에 납부한 이상, 위 금액 상당은 원고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의 지급자가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부담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므로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전제로 한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될 수 없는 것이고,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소득이 발생하여야 할것인데,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된

경우는 물론이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된

경우도 여기서 말하는 '과세대상인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참조), 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그 양도계약에

기한 채권의 존부 또는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등의 사유로 인해 그 수익이 확정되었다고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주식의 양도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성립하고

그 후 소득금액 지급 전에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 등을 지급자가 실제 납부하였다면, 그와 같이

실제로 납부한 정당한 세액은 지급할 소득금액에 서 미리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의 취지 참조).

2)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배당소득세액인 467,137,440원을 공제한 후 잔액인

2,832,862,560원만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호증의 기재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2014. 6. 10.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배당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467,137,440원을 과세관청에 실제로 납부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단지 이 사건 매매대금에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배당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할 것인지 여부만이 다투어지고 있을 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그 금액 자체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이처럼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에 기하여 원고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과세관청에 납부한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하여야할 매매대금은 원래의

금액에서 위와 같이 납부된 세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초과하여 나머지

매매대금으로 위 467,137,440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C의 경영권 확보를

목적으로 한 자산거래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매매계약에 기한 주식의 양도가

자본거래인 주식 소각 내지 자본 환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원천징수분 의제배당소득세액

공제 주장은 이유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다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는 점이 관계 법령의 해석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오히려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4.11. 28.

천안세무서장을 상대로 이미 납부한 위 배당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22. 거부통지를 받았고, 2015. 3. 23.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5. 5. 11. 그 이의신청이 기각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가 원천납세의무자로서 과세관청을 상대로 경정청구를 통한 위 배당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로 하여금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의 제재를 감수하면서까지 원고에게 위 배당소득세액을 포함한 이 사건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만약 이 사건 매매계약의 성격이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었음에도 사후적으로 피고가 그로 인해 취득한 주식에 대한 소각 절차를 거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자본거래에 해당하게 된 것으로 본다면, 이는 피고가 단순히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인 양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소각 절차를 진행한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배당소득세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살필 필요 없이 이 부분 청구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선택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그중 매매대금 지급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귀섭, 판사 최지수, 판사 최형철